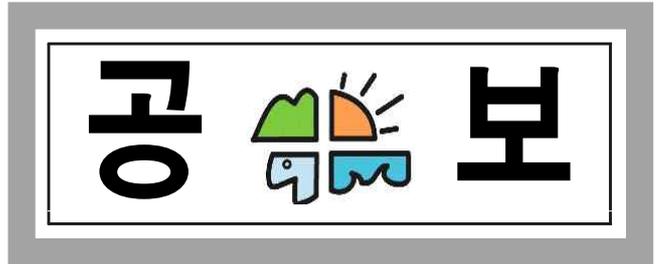


#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932호 2015년 4월 27일(월)

## 공 고

- 속초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 「속초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조례안」 입법예고..... 25

회 람									
-----	--	--	--	--	--	--	--	--	--

발행 : 기 획 감 사 실 (전화 : 639-2223, FAX : 639-2106)

「속초시 경관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 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7일

속 초 시 장

## 속초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경관관리의 기본방향, 경관계획 수립권자·사업자·시민의 책무(안 제3조, 안 제4조)
  - 시(市)의 자연·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경관형성 기본방향
  - 경관계획 수립 시 수립권자(市), 사업자, 시민의 책임과 의무 등
- 경관계획의 내용, 제안서 처리절차, 공청회 관련 사항(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
  - 경관계획 수립 제안 시 첨부서류, 제안서 검토사항 등
  - 경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경관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 및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주재자 지명 및 위촉에 관한 사항
- 경관사업의 대상 세분화(안 제9조)

-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및 해안 및 주요하천 등 수변공간 정비사업 등을 경관사업 대상으로 함.
- 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할 사항 신설(안 제11조)
  -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사업비 산출근거, 재원조달 방안의 적절성 등 고려
- 경관사업추진협의체 조직 및 기능(안 제12조, 안 제13조)
  - 협의체 위원 선정 및 운영 방법 등
  - 기능 : 사업추진 관련 의견 조정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평가 신설 (안 제14조, 안 제15조)
  - 지원대상 : 경관사업,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 재정지원 내용 : 계획수립을 위한 조사·설계비 및 연구비, 사업비, 유지관리비 등
  - 평가 : 재정지원 경관사업 대상 평가 및 평가결과 시상 등
-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및 경관협정서 내용 신설(안 제16조, 안 제18조)
  - 체결자 :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 경관협정서 내용 : 경관협정 승계, 변경 및 폐지, 이행계획 등
- 경관협정에 대한 기술 및 재정지원, 평가 신설(안 제21조부터 안 제23조까지)
  - 지원대상 :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 지원내용 :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등
  - 평가시기 : 경관협정 완료 및 폐지 시
- 사회기반시설사업,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명확화(안 제25조, 안 제26조)
  - 사회기반시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중 시장이 시행 또는 승인하는 50억원 이상의 사업의 시설
  - 건축물 : 경관지구내 건축물,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건축물, 공공건축물로 연면적 1,000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 미관지구의 5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주택건설사업 중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 경관위원회, 공동위원회 구성·운영 및 심의·자문대상, 소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사항(안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

- 경관위원회, 공동위원회 구성·운영 등
- 심의대상 : 재정지원 경관사업 등
- 자문대상 : 교량, 고가차도 등의 도시시설물과 전주, 도로명판, 교통 안전 시설물 등의 가로시설물 등
- 심의 의제사항(안 제34조)
  - 속초시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 사업 및 「강원도 경관형성 조례」에 따른 심의 또는 의제사업

###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속초시장(참조:건축디자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의견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건축디자인과 (우)217-701
- 전화 : 033-639-2766 / 팩스번호 033-639-2314

- 붙임 1. 속초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규제영향분석서. 끝.

## 속초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속초시 경관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속초시 경관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지자체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

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우리 시의 자연·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경관계획수립권자·사업자·시민의 책무)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경관계획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경관계획수립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물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 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저촉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에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4. 경관지구, 미관지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관광특구, 산림보호구역 등 특정 경관관리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5.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고유한 자연 및 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8.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3장 경관사업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3. 해안 및 주요 하천 등 수변공간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4. 도시구조물 및 공공시설물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5. 각종 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경관 및 디자인 관리·개선사업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경관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4.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방안
5. 사업설계도서(시방서, 설계도면 등을 말한다)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관사업 지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 관련 전문가
4. 경관사업 시행자
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6. 지방의회 의원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 ⑧ 시장은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⑨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3조(협의체의 기능)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제1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 2.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③ 시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에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때는 「속초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하는 경관사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 대해서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시행을 위한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4장 경관협정

제16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이하 "경관협정"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7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8조(경관협정서) 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② 그 밖의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9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20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21조(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비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23조(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① 시장은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는 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협정체결자 등에 대해서는 표지 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4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영 제17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 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② 제1항제7호 및 영 제17조에서 규정한 경관협정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5장 사회기반시설 사업 등의 경관심의

제25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중 시장이 시행 또는 승인하는 50억원 이상의 사업의 시설을 말한다.

제26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제 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해당 경관계획에서 경관심의를 받도록 정하는 건축물

3.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중축으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축물포함)

4. 미관지구의 5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중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6. 그 밖에 시장이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요청하는 건축물

## 제6장 경관위원회

제27조(경관위원회 설치) 시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속초시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도시경관업무담당 부서장, 건설 및 교통업무담당 부서장(소관 업무가 각각 다른 부서로 나뉘어진 경우에는 각 부서장 모두가 위원이 된다)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위촉한다. 단,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디자인·옥외광고·건축·도시·조경·토목·교통·환경·문화·농림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경관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경관관리 업무담당이 되며, 서기는 경관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경관관리담당자가 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기관(시 관련부서를 포함한다), 관련 공무원 등에게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심의·자문한 결과 의견이 있을 때에는 해당부서에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30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영 제26조제9항에서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 또는 사전검토 등을 위하

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소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시마다 지정하는 위원으로 구성하고, 구성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소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1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24조제3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다른 조례에서 심의를 받도록 정한 사항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경관사업
3. 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4.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32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공시설물로 별표에 해당하는 시설물 디자인에 관한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디자인(색상, 형태, 재질, 규격 등)의 일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경관형성 및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3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3조제5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

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4.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5.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34조(심의 의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심의내용에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1. 「속초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
2. 「속초시 건축조례」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
3. 「강원도 경관형성 조례」에 따른 심의 또는 의제사업
4. 현상공모의 방식으로 추진하는 디자인 사업

제35조(수당 등) 경관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한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규제의 재검토) 시장은 제6조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제25

조 사회기반시설 사업 경관심의 대상, 제26조 사회기반시설 사업 경관심의 대상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폐지 등)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위원회 자문대상 공공시설물(제32조제1호 관련)

1. 도시시설물

분 류	시 설 물 의 종 류	비 고
도로시설물	가. 교량(철교를 포함한다) 나. 고가차도 다. 도로폭 20m 이상인 도로에 설치하는 L=50m 이상의 보도	
도로부속 시설물	가. 보도육교 나. 도로폭 20m 이상인 도로(변)에 설치하는 L=20m 이상의 석축 및 옹벽 다. 도로폭 20m 이상인 도로(변)에 설치하는 L=20m 이상의 방음벽, 방호울타리, 중앙분리대, 낙석 방지망 등	

2. 가로시설물

분 류	시 설 물 의 종 류	비 고
도로부속 시설물	가. 도로폭 20m 이상인 도로(변)에 설치하는 50주이상의 가로등(배전함 포함) 및 각종 전주 나. 도로명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문화관광 시설	가.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관광안내소 및 관광안내지도, 안내표지판 나.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동상·기념비등 조형물	
가로녹지 시설	가. 분수대, 인공폭포 나. 소공원 조성 등	
환경관리 시설	가. 공중화장실 나. 방음방진시설	
교통관련 시설	가. 버스 및 택시 승강장 나. 교통안전시설물 및 교통안내표지판 등	

# 관 계 법 령 발 취

## □ 「경관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우수한 경관을 발굴하여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제7조(경관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 지역)**

②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군의 시장·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관할구역에 대하여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규제영향분석서

## I.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속초시 경관조례	<b>2. 구 분</b>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 연 장	
3. 소관부서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속초시 건축디자인과(경관디자인팀) ○ 건축디자인과장 김숙경, 경관디자인담당 하성란						
4. 근거법령 등	「경관법」, 「경관법 시행령」	관 련 규제수	3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input type="checkbox"/> 규제의 구분 : 비중요규제 <input type="checkbox"/> 분석방법 ○ 연간비용 : 비용발생 없음. ○ 피규제자수 : 경관계획 수립 제안자, 일반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 및 사회기반시설사업 시행자 ○ 경쟁제한적 요소 : 없음 ○ 국제기준 : 국제기준에 맞추어 과대 또는 불합리한 규제 없음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규 제의 내용	<input type="checkbox"/>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안 제6조) ○ 제안서 첨부서류 : 경관계획수립제안서, 경관현황분석도, 경관기본구상도,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물레이션,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input type="checkbox"/>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안 제25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중 시장이 시행 또는 승인하는 50억원 이상의 사업의 시설 <input type="checkbox"/>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안 제26조 제1호 ~ 제5호) ○ 경관지구의 건축물. 다만, 다음 건축물은 제외한다. - 「건축법」 제 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해당 경관계획에서 경관심의를 받도록 정하는 건축물 ○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증축으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축물포함) ○ 미관지구의 5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중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경관지구 건축물						

## II.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가. 문제의 정의·내용 및 문제발생의 원인

##### 1) 문제의 정의·내용

- 「경관법」, 「경관법 시행령」 전부개정으로 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경관계획의 제안, 경관심의의 효율적인 처리·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일정한 규정이 필요함에 따라 정함 규제임.

##### 2) 문제발생의 원인

- 경관계획 수립 제안에 있어 제안자의 구체적인 의도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경관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승인하기 위한 추가적인 자료요구가 발생할 수 있음.
- 자연·사회·역사적 경관자원과 조화되는 도시경관을 보전·관리·형성하여 지역의 특색에 맞는 도시경관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경관법」, 「경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을 조례로 규정함에 따라 발생.

#### 나.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 시민들 스스로가 경관계획 수립에 대한 제안을 통해 지역의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경관을 보전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경관을 형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함으로써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필요한 요소들을 반영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
-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이 나타나는 국토환경과 지역환경 조성을 위해 「경관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등의 규제 신설이 필요함

#### 다. 규제의 목표 설정

- 경관계획 수립 제안에 대한 방향제시와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 등의 활성화를 목표로 함.
- 경관위원회 심의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이 나타나는 국토환경과 지역환경 조성

###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가.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 반대 의견 및 사회적 제약요소 없음

나. 기술수준,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 본 규제는 기술수준과는 관계가 없으며,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신설된 규정과 종전의 경관 조례에서 규제하던 사항을 보완한 것으로 제도도입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 3.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가. 기존규제의 대체여부

- 기존 규제가 없어 대체가 불가함

나. 규제 외 다른 방법으로 목적달성 여부

- 비규제 방법으로 목적 달성에 한계가 있음

다. 유사한 기존규제와 중복 여부

- 기존의 유사한 규제와의 중복 없음

라. 규제의 확대 재생산 가능성 여부

- 규제의 확대 재생산 가능성 없음

###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가. 규제의 비용분석

- 별도의 소요비용 없음.

나. 규제의 편익분석

- 경관계획 수립 제안의 용이성 확보
- 경관심의를 통하여 경관의 체계적 조성·관리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 환경과 공간 창출로 대다수 주민들의 생활환경의 질 향상, 도시 경쟁력 강화 기여 등의 편익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

다.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 별도의 소요비용은 없으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시민전체를 위한 편익 발생함.

### 5. 경쟁제한적 요소 포함 여부

가. 시장경쟁 제한요소 : 경쟁요인 없음

나. 기업 활동 저해요소 : 기업 활동 저해요소 없음

## 6. 규제내용의 객관성·명료성

가. 규제기준과 절차의 명확성·일관성 등

○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으므로 명확성과 일관성이 있음.

나.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1) 규제의 법적근거

- 「경관법」, 「경관법 시행령」

2) 존속기한의 타당성

- 규제의 존속기한 부여는 타당하지 않으며 조례 폐지 시까지 존속

## 7.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가. 별도의 행정기구·인력·예산 등이 소요되지 않음

##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 해당사항 없음

## Ⅲ. 기타 기재사항

### 1. 사후성과 평가를 위한 기준제시

○ 경관계획의 제안은 그동안의 실적이 없어 평가를 위한 기준제시가 어려우나 향후 참여자에 대한 의견제시 등을 반영하겠으며, 경관위원회의 심의에 해당하는 준수 여부 증·감을 비교 분석하겠음.

### 2. 규제심사 요청

○ 건축디자인과 → 경제진흥과

## 「속초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7일

### 속 초 시 장

#### 1. 자치법규명: 속초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조례

####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 「주택법」 제59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규정이 개정(2013.12.24)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한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 감사요청 및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속초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조례』로 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 사항 등의 감사 대상을 규정(안 제2조)

– 「주택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감사 대상

- ▷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 ▷ 공동주택당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 ▷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감사요청 방법 및 감사실시 결정 사항을 정함(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를 선임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감사요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와 “요청인 연명부” <별지 제2호 서식> 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
-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지

다. 감사반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감사반장(이하 “반장” 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
- 전문감사관을 위촉하여 감사 반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
  -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법무사·건축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

라. 원활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한 자료 조사와 감사 실시방법, 감사 과정에서 감사의 유의사항을 규정(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사전조사를 실시
-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려면 감사예정일 7일전까지 감사를 받을 자에게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알려야 한다.
-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단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

마. 감사종료 후 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 및 통지, 감사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 등의 처리 사항을 규정(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 감사반장은 감사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보고
- 시장은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표자에게 통지
- 시장은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을 필요로 하는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라 조치하고,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

#### 4. 자치법규안: 붙임

## 5. 의견제출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5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할 곳: 우217-701 속초시 중앙로 183(중앙동469-6)  
속초시청 건축디자인과 주택담당  
(전화:033-639-2772, FAX:033-639-2314)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건축디자인과 주택담당(033-639-27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속초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제59조제6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속초시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요청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주택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때에는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를 선임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감사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요청인 연명부”(별지 제2호 서식)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조(감사실시 결정 및 제외대상)** ① 시장은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요청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택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시장의 감독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3.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조사하였거나 감사·조사 중인 경우
4.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5.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개인의 모함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그 밖의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결정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감사계획 수립)**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감사실시가 결정된 경우에는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기간
2. 감사범위
3.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
4. 감사에 소요될 예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반원이 분장된 임무를 숙지하고, 감사법 등을 연구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감사반 구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감사실시가 결정된 경우에는 제5조의 감사계획에 따라 속초시 공동주택관리 감사반(이하“감사반”이라 한다)을 감사반 장(이하“반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민간 전문가(이하“전문감사관”이라 한다)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전문감사관을 위촉하여 감사 반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

1.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법무사·건축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 관리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공동주택에 관한 감사에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감사반의 반장은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반원은 공동주택관리부서와 감사부서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부서 공무원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한 전문감사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사전조사의 실시)**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현황 파악 및 구체적인 감사방향 결정
2.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자료 수집 및 분석
3.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

**제7조(감사의 실시)** ①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려면 감사예정일 7일전까지 감사를 받을 자에게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③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감사결과보고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감사실시 사실을 미리 공개하여 감사대상단지(이하 “단지”라 한다)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8조(감사반의 유의사항)** 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단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원은 공정·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③ 감사반원은 단지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감사반원은 단지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⑤ 감사반원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원래의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

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감사결과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 및 감사기간
2. 감사반의 편성
3. 감사총평
4. 중점 감사사항
5. 지적사항 또는 처분을 요하는 사항
6. 건의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7. 현지 조치사항
8. 특기사항

**제10조(감사결과 통지)** ① 시장은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기간을 정하여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감사결과의 처리)** ① 시장은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을 필요로 하는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의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요청인의 비밀보호)** 시장은 감사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요 청 인 연 명 부

단 지 명 :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직 업	주 소	서명또는날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감사결과보고서

1. 대상단지 : (감사분야 : )  
2. 감사기간 :  
3. 감사결과 :

연번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확인서(증거자료 포함) 별첨

### 4.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20 년 월 일

감사관 직

성명

(인)

속초시장 귀하